

FTA로 “관세환급+FTA특혜” 두 마리 토끼를 잡다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A사는 방역관련제품 18가지 종류(HS CODE 6단위기준)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7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
- 제품소개(방역용 연무기, HS 제8424.89호)

구분	MFN세율	FTA세율	원산지결정기준
한-아세안 FTA(태국)	20.0%	0%	CTH or RVC 40
한-EU FTA	1.7%	0%	CTH or MC 50
한-인도 CEPA	7.5%	0%	CTSH and RVC 35

2. FTA 활용전 상황

- A업체는 국내 12개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수출 주력형 기업으로 수출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 발생

3. 장애 요소

- FTA가 회사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산지증빙자료 제공 등 협력사(제조사)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, 완제품에 대한 대외비 정보(투입원재료 리스트 및 재료비 등) 공개에 대한 협력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 발생

4. 극복 방법

- 중소기업 지원 FTA컨설팅을 통해 제조사 설득방법 강구
 - 수출비중이 높고 FTA활용 실익이 있는 물품을 선정하여 해당 물품 제조사 설득
 - ▶ 아세안(태국) 및 EU협정 활용에 실익이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방역용 연무기제품(HS 제8424.89호)을 대상 물품으로 선정하고 해당물품 제조사를 설득하기로 결정
 - 방역용 연무기제품(HS 제8424.89호)은 아세안과 EU협정에 공통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(CTH)이 적용되고 있어, 제조사에 BOM내역 중 원재료 가격을 제외한 투입원재료 정보를 요청하여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진행
 - ▶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비중이 낮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최소(미소)기준* 적용
- * 제조사에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2개 원재료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수출가격(FOB, EXW)의 10% 미만임을 확인

5. 활용 효과

- 아세안(태국)은 20%, EU는 1.7%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, 향후 베트남(2% 실익) 및 인도(7.5% 실익) 수출에 대해서도 바이어에게 FTA특혜관세혜택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신규거래 확장
- 수출자와 제조사간 쌓인 업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그간 발행되지 않았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통한 관세환급 가능

6. 시사점

- FTA 원산지관리 업무를 통해 수출자와 제조사간 업무 협력이 긴밀해 짐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해지게 되어 수출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익 발생